

심사보고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727호
----------	-------

2017. 11. 29.(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 2017년 11월 01일

다. 상정일자 : 2017년 11월 23일

-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규형 충북도립대학 사무국장)

가. 제안이유

- 일반인 및 외부기관의 대학 시설물 사용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대학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항 신설 : 제18조의2
-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조항 신설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 본 조례안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충북도립대학의 일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또한, 일반인 및 외부기관의 대학 시설물 이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조례에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 **충북도립대 시설물 최근 3년 간 이용 현황**

시설명	이용건수		
	2015년	2016년	2017년 10월 현재
회의실	5	6	24
강의실	0	0	29
전산실	0	0	0
운동장	35	40	58

- 조례안 [별표 2]의 시설물 사용료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인근 충남도립대의 사용료와 비교(시설물의 품질, 규모 등의 차이로 정확한 비교는 어려움)해 볼 때, 강의실, 전산실 사용료는 50%정도 높게 책정되었지만, 이용 건수가 많은 운동장과 회의실의 경우 오히려 이용 주민의 실질적 부담경감 차원에서 충남도립대의 35%~70%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는 등 사용료 책정에 있어 현실적인 주민 이용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충북·충남 도립대 시설물 사용료 비교

구분 시설별	충북도립대			충남도립대		
	사용기준	규모	사용료(원)	사용기준	규모	사용료(원)
소강당, 회의실	1일	100석	50,000	1일	208석	100,000
	4시간까지		25,000	4시간미만		50,000
운동장 (테니스, 족구장)	1일		70,000	1일		200,000
	4시간까지		35,000	4시간미만		50,000
강의실	1일	40석	30,000	1일	1실	20,000
	4시간까지		15,000			
전산실	1일	40석	30,000	1일	1실	20,000
	4시간까지		15,000			

- 또한, 운동장 사용료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표준화된 군 지역의 초·중·고교 학교 운동장 사용료와 비교해 볼 때 16% 정도 상회하는 수준으로 규정됨.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된 군 지역 사용료
[별표1]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군 지역 (시지역의 읍·면 포함)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따라서, 조례안 [별표 2]에 규정된 시설물 사용료는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8조의2 제2항에서,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전 납부토록 규정한 것은 사용신청을 해놓고 이를 당일 취소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규정한 것으로, 현재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등에서도 사용료 사전 납부를 규정해 놓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시기적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학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적정 수준에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 안 제1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충북도민 모두에게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사용신청으로 인한 시설물 유지비용 및 관리 부담 가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 이를 삭제하거나 면제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면제 대상 범위를 충북도민으로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사용료 징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의 마찰, 민원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시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사용료 반납, 파손 처리 등에 대한 표준양식, 절차 등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충북도립대 시설물의 유지, 관리 비용 부담 감소와 타 공공시설과의 사용료 형평성 측면에서 충북도민 모두에게 적용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운동장에 대해서는 전기료 실비 수준의 사용료만 받도록 수정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8조의2 제3항 제2호를 삭제함.
- [별표2] 시설명 운동장의 사용기준을 삭제하고, 사용료를 '전기료 실비'로 수정하며, 비고에 축구장을 추가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관련
번호	제727호

제안연월일 : 2017년 11월 23일

제안자 : 김영주 의원 외

□ 수정이유

- 충북도립대 시설물의 유지, 관리 부용 부담 감소와 타 공공시설과의 사용료 형평성 측면에서 충북도민 모두에게 적용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운동장에 대해서는 전기료 실비 수준의 사용료만 받도록 수정함.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8조의2 제3항 제2호를 삭제함.
- [별표2] 시설명 운동장의 사용기준을 삭제하고, 사용료를 '전기료 실비'로 수정하며, 비고에 축구장을 추가함.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의2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2 시설명 중 운동장의 사용기준 내용을 삭제하고,

사용료를 ‘전기료 실비’ 하며, 비고에 ‘축구장’ 을 포함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8조의2(사용료)</p> <p>①, ②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 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p> <p>2. 충청북도민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p> <p>3.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위한 회의실, 강의 실,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p>	<p>제18조의2(사용료)</p> <p>①, ② (원안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 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p> <p>2. (삭 제)</p> <p>2.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위한 회의실, 강의 실,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물 사용료(제18조의2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시설명</th> <th>사용기준</th> <th>규모</th> <th>사용료 (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대회의실</td> <td>1일</td> <td rowspan="2">100석</td> <td>50,000</td> <td rowspan="2"></td> </tr> <tr> <td>4시간까지</td> <td>25,000</td> </tr> <tr> <td rowspan="2">소회의실</td> <td>1일</td> <td rowspan="2">40석</td> <td>30,000</td> <td rowspan="2"></td> </tr> <tr> <td>4시간까지</td> <td>15,000</td> </tr> <tr> <td rowspan="2">합동 강의실</td> <td>1일</td> <td rowspan="2">120석</td> <td>50,000</td> <td rowspan="2"></td> </tr> <tr> <td>4시간까지</td> <td>25,000</td> </tr> <tr> <td rowspan="2">강의실</td> <td>1일</td> <td rowspan="2">40석</td> <td>30,000</td> <td rowspan="2"></td> </tr> <tr> <td>4시간까지</td> <td>15,000</td> </tr> <tr> <td rowspan="2">전산실</td> <td>1일</td> <td rowspan="2">40석</td> <td>30,000</td> <td rowspan="2"></td> </tr> <tr> <td>4시간까지</td> <td>15,000</td> </tr> <tr> <td rowspan="2">운동장</td> <td>1일</td> <td rowspan="2">3면</td> <td><u>70,000</u></td> <td rowspan="2">테니스장, 족구장</td> </tr> <tr> <td>4시간까지</td> <td><u>35,000</u></td> </tr> </tbody> </table>	시설명	사용기준	규모	사용료 (원)	비 고	대회의실	1일	10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소회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합동 강의실	1일	12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강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전산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운동장	1일	3면	<u>70,000</u>	테니스장, 족구장	4시간까지	<u>35,000</u>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물 사용료(제18조의2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시설명</th> <th>사용기준</th> <th>규모</th> <th>사용료 (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대회의실</td> <td>1일</td> <td rowspan="2">100석</td> <td>50,000</td> <td rowspan="2"></td> </tr> <tr> <td>4시간까지</td> <td>25,000</td> </tr> <tr> <td rowspan="2">소회의실</td> <td>1일</td> <td rowspan="2">40석</td> <td>30,000</td> <td rowspan="2"></td> </tr> <tr> <td>4시간까지</td> <td>15,000</td> </tr> <tr> <td rowspan="2">합동 강의실</td> <td>1일</td> <td rowspan="2">120석</td> <td>50,000</td> <td rowspan="2"></td> </tr> <tr> <td>4시간까지</td> <td>25,000</td> </tr> <tr> <td rowspan="2">강의실</td> <td>1일</td> <td rowspan="2">40석</td> <td>30,000</td> <td rowspan="2"></td> </tr> <tr> <td>4시간까지</td> <td>15,000</td> </tr> <tr> <td rowspan="2">전산실</td> <td>1일</td> <td rowspan="2">40석</td> <td>30,000</td> <td rowspan="2"></td> </tr> <tr> <td>4시간까지</td> <td>15,000</td> </tr> <tr> <td>운동장</td> <td></td> <td>3면</td> <td>전기료 실비</td> <td>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td> </tr> </tbody> </table>	시설명	사용기준	규모	사용료 (원)	비 고	대회의실	1일	10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소회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합동 강의실	1일	12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강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전산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운동장		3면	전기료 실비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시설명	사용기준	규모	사용료 (원)	비 고																																																																																									
대회의실	1일	10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소회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합동 강의실	1일	12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강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전산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운동장	1일	3면	<u>70,000</u>	테니스장, 족구장																																																																																									
	4시간까지		<u>35,000</u>																																																																																										
시설명	사용기준	규모	사용료 (원)	비 고																																																																																									
대회의실	1일	10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소회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합동 강의실	1일	12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강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전산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운동장		3면	전기료 실비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표와 같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용료) ① 총장은 대학의 시설물 중 일부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위한 회의실, 강의실,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중전의 별표) 중 “각종 증명별 수수료표”를 “각종 증명별 수수료표(제18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물 사용료(제18조의2제2항 관련)

시설명	사용기준	규모	사용료(원)	비고
대회의실	1일	10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소회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합동강의실	1일	12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강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전산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운동장		3면	전기료 실비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 1일 사용기준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09:00부터 18:00까지 이용 시에는 1일로 본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초과 시 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증명의 종류와 그 수수료는 <u>별표와</u> 같다. ③ (생 략)</p>	<p>제18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증명의 종류와 그 수수료는 <u>별표1과</u> 같다. ③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u>제18조의2(사용료) ① 총장은 대학교의 시설물 중 일부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u> <u>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2와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u> <u>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u>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위한 회의실, 강의실,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p>																																													
<p>[별표] 각 종 증명별 수수료표</p>	<p>[별표 1] 각 종 증명별 수수료표(제18조제2항 관련)</p>																																													
<p><신 설></p>	<p>[별표 2] 시설물 사용료(제18조의2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시설명</th> <th>사용기준</th> <th>규모</th> <th>사용료 (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대회회의실</td> <td>1일</td> <td rowspan="2">100석</td> <td>50,000</td> <td rowspan="2"></td> </tr> <tr> <td>4시간까지</td> <td>25,000</td> </tr> <tr> <td rowspan="2">소회의실</td> <td>1일</td> <td rowspan="2">40석</td> <td>30,000</td> <td rowspan="2"></td> </tr> <tr> <td>4시간까지</td> <td>15,000</td> </tr> <tr> <td rowspan="2">합동 강의실</td> <td>1일</td> <td rowspan="2">120석</td> <td>50,000</td> <td rowspan="2"></td> </tr> <tr> <td>4시간까지</td> <td>25,000</td> </tr> <tr> <td rowspan="2">강의실</td> <td>1일</td> <td rowspan="2">40석</td> <td>30,000</td> <td rowspan="2"></td> </tr> <tr> <td>4시간까지</td> <td>15,000</td> </tr> <tr> <td rowspan="2">전산실</td> <td>1일</td> <td rowspan="2">40석</td> <td>30,000</td> <td rowspan="2"></td> </tr> <tr> <td>4시간까지</td> <td>15,000</td> </tr> <tr> <td>운동장</td> <td></td> <td>3면</td> <td>전기료 실비</td> <td>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td> </tr> </tbody> </table>	시설명	사용기준	규모	사용료 (원)	비 고	대회회의실	1일	10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소회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합동 강의실	1일	12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강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전산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운동장		3면	전기료 실비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시설명	사용기준	규모	사용료 (원)	비 고																																										
대회회의실	1일	10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소회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합동 강의실	1일	120석	50,000																																											
	4시간까지		25,000																																											
강의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전산실	1일	40석	30,000																																											
	4시간까지		15,000																																											
운동장		3면	전기료 실비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